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0가합101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20261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0가합101837 판결

전문

원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현, 윤현철, 이성은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정한별, 민병의

변론 종결 2023. 3. 24.

판결 선고 2023. 5.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18. 8. 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929,673,68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18. 8. 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549,932,856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74,966,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와 E 사이에 2018. 8. 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C과 E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계약금 대출계약 중 피고 C에 대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E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자 담보신탁변경계약에 따라 설정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하라.
피고 D은 E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피고 C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아파트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조달의 경과

1) E는 G이 소유한 거제시 H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3개동(이하 'F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재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18. 3.경 피고 C에게 F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 50억 원 중 일부의 대출을 요청함과 아울러 잔금 및 부가가치세 대출기관의 주선을 의뢰하였다.

2) 피고 C은 F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중 30억 원은 E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을 조건으로, E에게 나머지 계약금 2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8. 4. 27. E와 사이에 E에게 25억 원(계약금 20억 원 + 수수료 및 선이자 5억 원)을 대출해주는 계약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 제3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5항에서는 'E는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E의 다른 신탁부동산인 울산 동구 I 소재 J아파트 중 29세대(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통틀어 이하 'J아파트 29세대'라 한다)1)에 관하여 피고 C을 2순위 우선수익자, 수익한도금액을 대출약정금의 130%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우선수익권 증서를 피고 C에게 교부하며,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 중 피고 C에게 J아파트 29세대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부분을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이라 한다).

3) E는 2018. 5. 24. G와 사이에 F아파트를 54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일까지, 잔금 490억원 및 부가가치세 1,479,606,540원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E는 K와 L로부터 각 15억 원을 위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2018. 5. 23. G 계좌에 계약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입금하였다. E가 계약금 중 3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자, 피고 C은 2018. 5. 24.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 20억 원을 G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에 따른 우선수익권 설정

1) J아파트 29세대는 E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변경전 상호: M)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N조합 외 7개 금융기관이 각 세대별로 1순위 우선수익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에 따라 J아파트 29세대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고자, 2018. 7.경 피고 D에게 수익권증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후 E는 피고 D, N조합 외 7개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피고 C을 J아파트 29세대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담보신탁변경계약을 금융기관별로 체결하였고(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 2018. 12. 31. 위와 같은 내용을 신탁원부에 등재하였다.

다. F아파트 잔금 및 부가가치세 조달 경과

1) 한편, 원고 A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로서 'O 제1호, 제2호' 펀드로 88억 원(제1호 펀드 44억 원, 제2호 펀드 44억 원)을 모집하여, 이를 원고 B에게 신탁하였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E의 의뢰에 따라 E에게 F아파트 매매 잔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의 자금을 대출하여 줄 기관을 주선하였고, 피고 C의 주선으로 P, Q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E에 대한 대출에 참가하였으며, 원고들도 위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이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7. 27. 원고들 및 P외 2개의 금융기관, Q조합 외 9개의 금융기관(이하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피고 C과 사이에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은 담보부동산인 F아파트를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누어서 체결되었는데, 각 부문별 및 공통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부분 담보대출약정]

○ 대출금: 540억 원 중 182억 원

○ 개별대주별 대출약정금

Tranche A	P외 2개의 금융기관	합계 152억 원
Tranche B	원고 B (신탁업자의 지위에서)(15억 원은 이후 원고 A에게 채권양도)	15억 원15억 원
합계	182억 원	

○ 담보부동산 : F아파트 R동 94세대, S호(이하 '1부분'이라 한다)

[2부분 담보대출약정]

○ 대출금: 540억 원 중 358억 원

○ 개별대주별 대출약정금

Tranche A	Q조합 외 9개의 금융기관	합계 300억 원
Tranche B	원고 B (신탁업자의 지위에서)(29억 원은 이후 원고 A에게 채권양도)	29억 원 29억 원
합계	358억 원	

○ 담보부동산 : F아파트 S호 제외한 93세대, T동 94세대(이하 '2부분'이라 한다)

[공통사항]

대리금융기관: 피고 C

○ 제2조

제1항 대출금의 인출

개별대주는 차주의 인출요청시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인출선행조건이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개별대주별 대출약정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그 입금에 의하여 차주는 개별대주별 대출약정금 전액을 차입한 것으로 한다.

제2항 인출선행조건

1. 인출가능기간 만료일 1영업일 이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인출후행조건

3. 차주는 인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2억 원(1부분 관련) 및 4억 원(2부분 관련)이 운영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제1항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1. 차주는 인출일까지 본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i) Tranche A 대주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Tranche A 대주의 대출약정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한도로, ii) Tranche B 대주를 2순위 우선수익자, Tranche B 대주의 대출약정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한도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고 해당사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며, 우선수익권증서가 Tranche A 대주 및 Tranche B 대주에게 각 발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2항 담보제공의 금지

차주는 본 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경우 이외에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나 장래의 재산, 수익, 자산에 대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인출은 2018. 7. 31.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E가 법인세 1,966,354,950원을 체납하여 인출선행조건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인출이 연기되었다. 이에 E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U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세를 완납하였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2018. 8. 8. 대출금을 인출하였다.

4) E는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을 통해 G에게 잔금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 8. 8.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E는 2018. 7. 27. 피고 D와 F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8.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F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대주단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을, 원고 B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각 설정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의 체결

1) 한편, E는 2018. 7. 27. 피고 C와 'F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8억 원은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E는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체납 법인세 1,966,354,950원을 납부해야만 했으므로, 피고 C의 주선으로 2018. 8. 2. U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채무자 겸 양도담보설정자: E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 피고 C

-양도대상권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가 동울산세무서에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1,479,606,540원을 한도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제4조 양도담보권자의 권리행사

4. 양도담보권자는 본 약정에 따라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다.

- 1) 2억 원은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중 1부문 관련 운영계좌로, 4억 원은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중 2부문 관련 운영계좌로 각 이체
- 2)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및 U 사이에 2018. 8. 2. 체결된 대출약정금 9억 원의 잔존 대출원금 상환
- 3) 잔존 금원은 전액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상 대출금 조기상환
- 3)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은 2018. 8. 9.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 4) E가 2019. 1. 25.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2019. 3.경 E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문이 있고 위 채권에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여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9. 3. 19. E 또는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1,486,778,690원을 공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1502호).

마. 원고들 사이의 대출금 채권 양도·양수

한편, 원고 B은 2018. 12. 18.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B이 신탁업자로서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에 따라 E에게 갖는 대출금 채권 44억 원(F아파트 1부문 관련 15억 원, 2부문 관련 29억 원) 및 담보권 등을 집합투자업자인 원고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8. 12. 27.자 담보신탁변경계약을 통해 원고 B이 F아파트 1부문, 2부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일부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2, 14, 15, 20, 48, 50, 51, 59호증, 을 제8 내지 12, 14, 15,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J아파트 29세대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E의 행위는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진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우선수익권을 E에게 양도할 것을, 피고 D에 대하여는 신탁원부에서 피고 C의 우선수익권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채권과 관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 취소 부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20. 6. 9.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에 따라 J아파트 29세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을 알린 바 있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위 준비서면이 송달될 무렵인 2020. 6. 10.에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7. 16.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들이 처음에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담보신탁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실, 피고들이 2020. 6. 9.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담보신탁변경계약 체결 전 2018. 4. 27.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고들이 2021. 7. 16. 비로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취소를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담보신탁변경계약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인 J아파트 29세대에 관하여 피고 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 위한 등기상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초 이 사건 담보신탁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1. 7. 16. 청구변경은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차취소권의 행사시기를 2021. 7. 16.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C의 우선수익권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비추어 허용되는 소송형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의 우선수익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수탁업무로 신탁원부상 그 말소의 기재를 할 것을 구하는 취지일 뿐,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우선수익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하는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우선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계약을 원인관계로 하여 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것과 유사하고, 그 우선수익권의 설정 또는 말소는 등기부상 저당권의 설정 또는 말소와 유사하게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탁자의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은 단순히 신탁원부의 작성관리자로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신청의사에 따라 사실행위로 기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업무의 일환으로 우선수익자의 권리 존부·범위 및 다른 우선수익자와의 권리상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E와 피고 D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16호증) 제3조 제2항에서는 'E는 피고 D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탁자인 피고 D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D이 이 사건 담보신탁변경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의 2순위 우선수익권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피고 C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의 양도(말소)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인 피고 D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우선수익권 기재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D에 대하여 그 승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말소(엄밀히 말하면 말소에 대한 승낙 및 말소사실의 기재)를 구하는 것 역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행사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말소에 의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부당히 피고 C에게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허용되는 소송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중 929,673,684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 (직권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2)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은 동울산세무서장이 공탁한 이 사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1,486,778,690원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울산지방법원 V), 피고 C에게 1순위로 1,479,606,540원을, 동울산세무서에 2순위로 7,761,80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E에게 F아파트 매수 계약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던 L은 2019. 6. 14. 피고 C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위 배당표의 경정을 통한 원상회복을 구한 사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1,479,606,540원에서 549,932,856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929,673,684원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1. 확정된 사실(부산고등법원 2021나52559 판결, 대법원 2022다25946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L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2. 12. 7.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929,673,68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중 929,673,684원은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중 929,673,684원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E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대출금 채권은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체결일인 2018. 7. 27. 성립하였는데 반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은 2018. 4. 27.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것이다.

그런데 갑 제48, 50호증, 을 제1, 8, 9,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 당시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① E는 F아파트를 매수하고자 먼저 피고 C, K, L로부터 계약금 5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통해 G와 F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F아파트를 이 사건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여 G에게 지급할 잔금을 조달하였다. 이처럼 F아파트 매수자금 조달과정은 E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전제가 된 피고 C과의 이 사건 계약금 대출약정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주단과의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등을 각각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E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마련하던 당시는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이 체결된 2018. 4. 27. 무렵은 피고 C이 W를 통해 F아파트 매수 잔금에 관한 대주단을 모집하려던 시점에 불과하여,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또한 W가 2018. 4. 25. 원고 A에게 대주단 참여를 제안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대주단 참여 여부를 둘러싼 교섭은 2018. 4. 27. 이후 이루어졌다.

③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의 전제가 된 G과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 성립 이후인 2018. 5. 24. 체결되었다. 피고 C은 E가 계약금 50억 원 중 3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을 조건으로 2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인데, E는 2018. 5. 21. 경에야 K와 L로부터 30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 C으로부터 25억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2018. 4. 27.에는 E가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하여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④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 당시 누구라도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E가 자력이 부족하여 F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의 취소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원고들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체결일인 2018. 8. 2. 이전인 2018. 7. 27. 이미 성립해있었다.

2)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는지 여부 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은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은 X감정평가법인에 F아파트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X감정평가법인은 2018. 5. 25.를 기준일자로 하여 F아파트 1부문의 시가를 219억 3,200만 원²⁾으로, 2부문의 시가를 431억 3,800만 원³⁾으로 감정하였다.

② F아파트 1부문에는 이 사건 대주단 중 P외 2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우선수익권 한도액 합계는 197억 6,000만 원이며, 2부문에는 Q조합 외 9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우선수익권 한도액 합계는 385억 원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2018. 12. 18. 원고 A에게 E에 대한 대출금 채권 44억 원 및 그 담보권을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E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44억 원(1부문 15억 원, 2부문 29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며, 원고들에 대하여 F아파트 1부문에는 각 한도액 19억 5,000만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고, 2부문에는 각 한도액 37억 7,000만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각 대출금 채권 중 9억 9,500만 원은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으므로, 위 범위 내의 채권은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등 참조), X감정평가법인이 2018. 5. 25.를 기준일자로

감정한 F아파트의 시가는 위 기준일자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후인 2018. 8. 2. 체결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② F아파트 1부문의 잔존 가치는 위 부동산 가액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우선수익권 한도를 공제한 21억 7,200만 원(= 219억 3,200만 원 - 197억 6,000만 원)이고, 2부문의 잔존 가치는 위 부동산 가액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우선수익권 한도를 공제한 46억 3,800만 원(= 431억 3,800만 원 - 385억 원)이다.

③ 그런데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은 1부문에 대하여 각 15억 원, 합계 30억 원이고, 2부문에 대하여 각 29억 원, 합계 58억 원이므로, 위 대출금 채권 중 F아파트의 잔존 담보가치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금액은 1부문 8억 2,800만 원(= 30억 원 - 21억 7,200만 원, 원고별 각 4억 1,400만 원)이고, 2부분 11억 6,200만 원(= 58억 원 - 46억 3,800만 원, 원고별 각 5억 8,1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대출금 채권 중 9억 9,500만 원(= 원고별 1부문 4억 1,400만 원 + 2부분 5억 8,100만 원)은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E의 무자력 여부 갑 제11, 12, 20, 26, 27 내지 35, 38, 39, 41, 42, 44, 5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당시 E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E는 울산 남구 Z 오피스텔동 AA호를 2017. 1. 9. 21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7. 1.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8. 8. 2.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1,069,833원(= 원본 89,604,204원 + 이자 1,465,629원4))이므로, 위 부동산은 118,930,167원(= 매수 가액 210,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91,069,833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E가 소유하던 울산 동구 I 지상 J아파트 11세대에는 2017. 2. 6. 및 2017. 6. 14. 근저당권자 AB조합, AC조합, 채권최고액 총합 30억 1,8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2017. 6. 30. 근저당권자 AD,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차순위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원본을 기준으로 AB조합, AC조합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25억

5,900만 원5) , AD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벗어나는 16억 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분양가는 2017. 2. 기준 합계 34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AB조합, AC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AD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 35억 5,9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E가 피고 D에게 신탁한 J아파트 29세대의 분양가는 2017. 2. 기준 합계 106억 6,300만 원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의 대출금 채권 원본은 2018. 4. 24. 기준 합계 75억 1,000만 원6) 이므로, 위 부동산은 2018. 8. 2. 무렵 31억 5,300만 원(= 분양가 106억 6,300만 원 - 우선수익권자들의 대출금 채권 원본 75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④ E는 F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D에게 신탁해둔 상태이긴 하였으나, F아파트의 감정가는 1, 2부문 합계 650억 7,000만 원이고, 이미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을 통해 이 사건 대주단에게 합계 697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F아파트에 대하여 E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주단의 우선수익권 및 대출금 규모를 고려해보면 E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당시 E의 F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당시 E는 1,966,354,950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F아파트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L에 대하여 18억 7,100만 원, K에 대하여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E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E가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U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체납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U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중 6억 원은 원고들이 포함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원고들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제4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중 6억 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5억 원을 체납 세금의 납부자금을 대출해 준 U에게, 나머지 잔액을 피고 C에게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자금집행의 순서를 정한 목적의 일부는 피고 C이 원고측 담보대출약정과 U 대출계약을 주선했던 당사자이자 이 사건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의 지위에서, E가 대출금의 인출선행조건(체납된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및 인출후행조건(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6억 원을 운영계좌에 입금)을 충족시켜 차질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 사해성이 없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C은 E에게 F아파트 계약금 일부를 대출한 후 자신의 대출금 채권을 우선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 약정을 체결하였고, 담보를 더 보강하기 위해 원고측 담보대출약정일과 같은 날인 2018. 7. 27. E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8억 원을 피고 C의 대출금 조기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위 8억 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략 1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그 금액에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제공할 6억 원을 공제하여 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위 합의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주단의 권리를 해한다는 인식 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 6일 후인 2018. 8. 2. 체결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은 위 선행 합의에서 피고 C에게 보장하기로 한 금액인 8억 원을 초과하여 E가 피고 C에게 1,479,606,54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전액을 양도한다는 것이다.

② E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이 사건 대주단과 U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거나 그 채권을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이 사건 대주단과 U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출주선기관에 불과한 피고 C이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전부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자신 및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자금집행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서 피고 C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6억 원을 먼저 이 사건 대주단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계좌에 입금하고, 최대 5억 원의 범위에서 U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 C이 E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일 뿐이고, 이 사건 대주단 및 U가 피고 C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합유하는 등으로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에게 직접 위 6억 원 또는 5억 원을 우선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이 이 사건 대주단 또는 U에게 그들의 채권보전을 위한 구속력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에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C의 채권 외에 이 사건 대주단, U의 채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분리되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 U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로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나 이 사건 대주단 등에게 이익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

⑤ 한편 U는 그 후 E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대출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나(부산고등법원 2021나525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공탁되었다가 E의 채권자 L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공탁금 중 929,673,684원이 L에게 배당되고 피고 C에는 549,932,856원만이 배당되어,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서 예정한 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자금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C로서는 배당받은 금액만이라도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우선 이 사건 대주단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또는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의도로 취하여진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및 피고 C의 악의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측 담보대출약정 체결 직후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피고 C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E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그 채권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은 동울산세무서장이 공탁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1,479,606,540원 중 929,673,684원은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각 9억 9,500만 원 내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잔존액인 549,932,856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서 각 274,966,428원(= 549,932,856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세금환급채권 양도담보계약을 929,673,684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정인

판사임효빈

판사방민우

별지

- 1) 당초 위 J아파트 중 24세대에 대하여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우선수익권 설정 과정에서 29세대로 변경되었다.
- 2) F아파트 R동 94세대 216억 9,000만 원 + S호 2억 4,200만 원
- 3) F아파트 Y동 94세대 216억 9,000만 원 + T동 216억 9,000만 원 - S호 2억 4,200만 원
- 4)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의 이자 1,808,398원 × 124일/153일
- 5) J아파트 AE호의 경우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6) N조합의 대출금 채권은 2019. 12. 27. 성립하였으므로 제외한다.